

환경부고시 제2022-129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2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4일

환 경 부 장 관

##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 1. 지정대상

가. 녹색매장 : 법 제18조제1항(대규모) 및 영 제14조의2(중·소규모)에 따른 점포

나. 특화된 녹색매장

1) ‘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2) ‘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이미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점포이면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이 경우 특화된 녹색매장 지정 기간은 기존 녹색매장 지정기간과 동일함

### 2. 지정기준

가. 녹색매장

- 대규모 매장: 필수항목 충족, 평점항목 총 배점의 80% 및 분류별 배점의 50% 이상일 것
  - 중·소규모매장: 필수항목 충족, 평점항목 총 배점의 80% 이상일 것
- 나. 특화된 녹색매장 : 가 항목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매장 중 평가기준의 특화항목을 추가로 충족할 것.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

3. 평가기준

가. 필수항목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및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

구분	세부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필수항목	녹색매장 운영 계획	-

나. 평점항목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구분	분류	세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평점항목	녹색제품 판매촉진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18(가점 2)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 홍보	20(가점 5)
		매장운영 물품 대상 녹색제품 구매 비율	17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15
	매장 환경경영 개선	환경목표(에너지, 용수) 수립	15(가점 3)
		자원관리	15
총 배점			100(가점 10)

다. 평점항목 :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

구분	분류	세부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평점항목	녹색제품 판매촉진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20(가점2)
		녹색제품 환경적 특성 홍보	60(가점3)
	녹색매장 인식 제고	직원 환경교육 실시	20
총 배점			100(가점5)

라. 특화항목(대·중소규모)

구분	세부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필수항목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	-

#### 4. 녹색매장 세부 평점 산출기준

가. 필수항목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가) 녹색매장 운영 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2)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

가) 녹색매장 운영 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나. 평점항목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가) 녹색제품 판매촉진

①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공통	18	·1.0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면적이 25㎡ 이상 ·0.8 : 20㎡ 이상 ·0.6 : 18㎡ 이상 ·0.4 : 15㎡ 이상 ·0.2 : 10㎡ 이상
	가점 2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군 중 2개 이상 품목군에서 3, 4단(6단 매대 기준)에 녹색제품을 우선 진열하는 경우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현장사진, 녹색제품 판매품목

\* 진열대상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녹색제품(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저탄소 인증제품(이하 지정기준 내 동일적용))

## ②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 홍보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백화점	20	·1.0 : 6개 이상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8 : 5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6 : 4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4 : 3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2 : 2개 이하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대형마트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20	·1.0 : 7개 이상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8 : 6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6 : 5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4 : 4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2 : 3개 이하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공통	가점3	·계산대 앞에 그린카드 발급, 사용방법 등 안내문 비치 및 디스플레이 매체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안내
	가점1	·매장 자체 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협력 녹색제품 판촉 이벤트 연간 1회 이상 실시
	가점1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자 행사 개최(녹색소비 및 친환경 생활 관련 문화센터 강좌 개설, 소비자 참여 녹색제품 체험행사 개최 등)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각 상품진열대 별 홍보물 부착 사진, 녹색제품 판촉 이벤트 실시 및 계획 자료, 소비자 강좌 프로그램 자료, 소비자 참여 체험행사 개최 자료

\* 품목군 : 가전, 조명, 페인트, 식음료, 주방세제, 세탁세제, 생활용품 등

### ③ 매장운영 물품 대상 녹색제품 구매 비율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공통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지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10% 이상</li> <li>.0.8 : 8% 이상, 10% 미만</li> <li>.0.6 : 6% 이상, 8% 미만</li> <li>.0.4 : 4% 이상, 6% 미만</li> <li>.0.2 : 4% 미만</li> </ul> </li> <li>- 구매비율 감소 시 가중치 미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지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식 :  <math display="block">\{(\text{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 비율} - \text{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비율 평균}) / (\text{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비율 평균})\} \times 100</math> </li> <li>-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 5% 이상 증가</li> <li>.0.8 : 4% 이상, 5% 미만 증가</li> <li>.0.6 : 3% 이상, 4% 미만 증가</li> <li>.0.4 : 2% 이상, 3% 미만 증가</li> <li>.0.2 : 2% 미만 증가</li> </ul> </li> <li>- 산식에 의한 결과값 감소 시 가중치 미부여</li> <li>-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 비율이 10% 이상인 매장이 산식에 의한 결과값 증가 시 가중치 1 부여</li> </ul> </li> </ul>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연간 녹색제품 구매 자료

\* 녹색제품 구매 비율 :  $(\text{연간 녹색제품 구매금액} / \text{연간 총 구매금액}) \times 100$

### ④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백화점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지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총 매출액 대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0.3% 이상</li> <li>.0.8 : 0.2% 이상, 0.3% 미만</li> <li>.0.6 : 0.1% 이상, 0.2% 미만</li> <li>.0.4 : 0.05% 이상, 0.1% 미만</li> <li>.0.2 : 0.05% 미만</li> </ul> </li> <li>- 매출액 비율 감소 시 가중치 미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지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식 :  <math display="block">\{(\text{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 \text{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평균}) / (\text{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평균})\} \times 100</math> </li> <li>-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 5% 이상 증가</li> <li>.0.8 : 4% 이상, 5% 미만 증가</li> <li>.0.6 : 3% 이상, 4% 미만 증가</li> <li>.0.4 : 2% 이상, 3% 미만 증가</li> <li>.0.2 : 2% 미만 증가</li> </ul> </li> <li>- 산식에 의한 결과값 감소 시 가중치 미부여</li> <li>-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이 0.3% 이상인 매장이 산식에 의한 결과값 증가 시 가중치 1 부여</li> </ul> </li> </ul>

대형 마트 / 농수 산물 종합 유통 센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지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총 매출액 대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2.0% 이상</li> <li>·0.8 : 1.5% 이상, 2.0% 미만</li> <li>·0.6 : 1.0% 이상, 1.5% 미만</li> <li>·0.4 : 0.5% 이상, 1.0% 미만</li> <li>·0.2 : 0.5% 미만</li> </ul> </li> <li>- 매출액 비율 감소 시 가중치 미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지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식 : {(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평균)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매출액 평균)} × 100</li> <li>-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 5% 이상 증가</li> <li>·0.8 : 4% 이상, 5% 미만 증가</li> <li>·0.6 : 3% 이상, 4% 미만 증가</li> <li>·0.4 : 2% 이상, 3% 미만 증가</li> <li>·0.2 : 2% 미만 증가</li> </ul> </li> <li>- 산식에 의한 결과값 감소 시 가중치 미부여</li> <li>-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인 매장이 산식에 의한 결과값 증가 시 가중치 1 부여</li> </ul> </li> </ul>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연간 녹색제품 매출액 자료

\*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 (연간 녹색제품 매출액 / 연간 총 매출액) × 100

## 나) 매장 환경경영 개선

### ① 환경목표(에너지, 용수) 수립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공통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지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 환경목표를 정량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평가 후 다음 연도 목표에 반영</li> <li>·0.8 : 환경목표를 정량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 후 평가</li> <li>·0.6 : 환경목표를 정량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주기적 관리 수행</li> <li>·0.4 : 환경목표 수립</li> </ul> </li> <li>- 환경목표 미수립 시 가중치 미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지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량적인 환경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달성 시 배점 부여(가중치 1.0)</li> </ul> </li> <li>- 매장 경영계획에 의한 환경목표 변동 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련 서류 제출 및 승인에 의해 환경목표 변경 가능</li> </ul> </li> </ul>
	가점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장 주차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 1점</li> <li>·직원 환경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 1점</li> <li>·매장 내 권장온도 준수 및 정책 홍보 : 1점</li> </ul>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분야별 환경목표, 이행계획서 등의 내부 보고서 및 결재 문서, 환경목표 추진 이행계획 점검 내역 자료

\* 에너지 8점, 용수 7점 배점 부여

② 자원관리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백화점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지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이 0.27 tCO<sub>2</sub>/m<sup>2</sup> 미만</li> <li>·0.8 : 0.27 tCO<sub>2</sub>/m<sup>2</sup> 이상, 0.29 tCO<sub>2</sub>/m<sup>2</sup> 미만</li> <li>·0.6 : 0.29 tCO<sub>2</sub>/m<sup>2</sup> 이상, 0.31 tCO<sub>2</sub>/m<sup>2</sup> 미만</li> <li>·0.4 : 0.31 tCO<sub>2</sub>/m<sup>2</sup> 이상, 0.33 tCO<sub>2</sub>/m<sup>2</sup> 미만</li> <li>·0.2 : 0.33 tCO<sub>2</sub>/m<sup>2</sup> 이상</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지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 × 100</li> </ul> </li> <li>-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 5% 이상 저감</li> <li>·0.8 : 4% 이상, 5% 미만 저감</li> <li>·0.6 : 3% 이상, 4% 미만 저감</li> <li>·0.4 : 2% 이상, 3% 미만 저감</li> <li>·0.2 : 2% 미만 저감</li> </ul> </li> <li>- 산식에 의한 결과값 증가 시 가중치 미부여</li> <li>- 신청일 기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0.27 tCO<sub>2</sub>/m<sup>2</sup> 미만인 매장이 산식에 의한 결과값 감소 시 가중치 1 부여</li> </ul> </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지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수 사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용수 사용량 원단위 평균이 1.8 ton/m<sup>2</sup> 미만</li> <li>·0.8 : 1.8 ton/m<sup>2</sup> 이상, 2.1 ton/m<sup>2</sup> 미만</li> <li>·0.6 : 2.1 ton/m<sup>2</sup> 이상, 2.4 ton/m<sup>2</sup> 미만</li> <li>·0.4 : 2.4 ton/m<sup>2</sup> 이상, 2.7 ton/m<sup>2</sup> 미만</li> <li>·0.2 : 2.7 ton/m<sup>2</sup> 이상</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지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용수 사용량 원단위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용수 사용량 원단위 평균)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용수 사용량 원단위 평균} × 100</li> </ul> </li> <li>-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 5% 이상 저감</li> <li>·0.8 : 4% 이상, 5% 미만 저감</li> <li>·0.6 : 3% 이상, 4% 미만 저감</li> <li>·0.4 : 2% 이상, 3% 미만 저감</li> <li>·0.2 : 2% 미만 저감</li> </ul> </li> <li>- 산식에 의한 결과값 증가 시 가중치 미부여</li> <li>- 신청일 기준 전년도 용수 사용량이 1.8 ton/m<sup>2</sup> 미만인 매장이 산식에 의한 결과값 감소 시 가중치 1 부여</li> </ul> </li> </ul>

대형 마트 / 농수 산물 종합 유통 센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지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량</li> <li>·1.0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이 0.07 tCO<sub>2</sub>/m<sup>2</sup> 미만</li> <li>·0.8 : 0.07 tCO<sub>2</sub>/m<sup>2</sup> 이상, 0.09 tCO<sub>2</sub>/m<sup>2</sup> 미만</li> <li>·0.6 : 0.09 tCO<sub>2</sub>/m<sup>2</sup> 이상, 0.11 tCO<sub>2</sub>/m<sup>2</sup> 미만</li> <li>·0.4 : 0.11 tCO<sub>2</sub>/m<sup>2</sup> 이상, 0.13 tCO<sub>2</sub>/m<sup>2</sup> 미만</li> <li>·0.2 : 0.13 tCO<sub>2</sub>/m<sup>2</sup> 이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지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식 : {(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 × 100</li> <li>-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 5% 이상 저감</li> <li>·0.8 : 4% 이상, 5% 미만 저감</li> <li>·0.6 : 3% 이상, 4% 미만 저감</li> <li>·0.4 : 2% 이상, 3% 미만 저감</li> <li>·0.2 : 2% 미만 저감</li> </ul> </li> <li>- 산식에 의한 결과값 증가 시 가중치 미부여</li> <li>- 신청일 기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0.07 tCO<sub>2</sub>/m<sup>2</sup> 미만인 매장이 산식에 의한 결과값 감소 시 가중치 1 부여</li> </ul> </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지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수 사용량</li> <li>·1.0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용수 사용량 원단위 평균이 0.9 ton/m<sup>2</sup> 미만</li> <li>·0.8 : 0.9 ton/m<sup>2</sup> 이상, 1.2 ton/m<sup>2</sup> 미만</li> <li>·0.6 : 1.2 ton/m<sup>2</sup> 이상, 1.5 ton/m<sup>2</sup> 미만</li> <li>·0.4 : 1.5 ton/m<sup>2</sup> 이상, 1.8 ton/m<sup>2</sup> 미만</li> <li>·0.2 : 1.8 ton/m<sup>2</sup> 이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지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식 : {(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용수 사용량 원단위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용수 사용량 원단위 평균)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용수 사용량 원단위 평균} × 100</li> <li>-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 5% 이상 저감</li> <li>·0.8 : 4% 이상, 5% 미만 저감</li> <li>·0.6 : 3% 이상, 4% 미만 저감</li> <li>·0.4 : 2% 이상, 3% 미만 저감</li> <li>·0.2 : 2% 미만 저감</li> </ul> </li> <li>- 산식에 의한 결과값 증가 시 가중치 미부여</li> <li>- 신청일 기준 전년도 용수 사용량이 0.9 ton/m<sup>2</sup> 미만인 매장이 산식에 의한 결과값 감소 시 가중치 1 부여</li> </ul> </li> </ul>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연간 용수 사용량 자료, 매장 개장일 및 개장시간 자료 등

\*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tCO<sub>2</sub>/m<sup>2</sup>) : 1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tCO<sub>2</sub>) / 연면적(m<sup>2</sup>)

\* 용수 사용량 원단위(tCO<sub>2</sub>/m<sup>2</sup>) : 1년 누적 용수 사용량(ton) / 연면적(m<sup>2</sup>)

## 2)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

### 가) 녹색제품 판매촉진

#### ①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중·소 규모 매장	20	.1.0 :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면적이 5㎡ 이상 .0.9 : 4㎡ 이상 .0.8 : 3㎡ 이상 .0.7 : 2㎡ 이상 .0.6 : 1㎡ 이상 .0.5 : 1㎡ 미만
	가점 2	·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군 중 1개 이상 품목군에서 3, 4단(6단 매대 기준)에 녹색제품을 우선 진열하는 경우

#### ②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홍보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중·소 규모 매장	20	.1.0 : 2개 이상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8 : 1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40	.1.0 : 6개 이상 제품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9 : 5개 제품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8 : 4개 제품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7 : 3개 제품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6 : 2개 제품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5 : 1개 제품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가점3	· 계산대 앞에 그린카드 발급, 사용방법 등 안내문 비치 및 디스플레이 매체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안내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각 상품진열대 별 홍보물 부착 사진

\* 품목군 : 가전, 조명, 페인트, 식음료, 주방세제, 세탁세제, 생활용품 등

### 나) 녹색매장 인식 제고

#### ① 직원 환경교육 실시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공통	20	· 직원 환경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직원 환경교육 실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이버환경실무교육, 오프라인 교육 등 활용), 녹색구매지원센터, 본사) 시 부여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환경교육 관련 수료증 등 증빙자료

## 5. 특화된 녹색매장 세부평가 산출기준

가. 필수항목: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나. 평점항목: 포장재 최소화 특화

분류	세부항목	평가
포장재 최소화	4개 품목 이상의 제품을 포장재 없이 판매하거나 소분 [(小分)완제품을 나누는 것] 판매	필수
	3개 품목 이상의 제품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포장횟수 보다 축소	선택 (1항목 이상)
	3개 품목 이상의 제품에 대한 포장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성으로 변경	
친환경 배송	배송 포장시 1회용 배송 포장재(종이, 스티로폼 상자 등)가 아닌 다회용 또는 재사용 포장재로 변경	선택 (1항목 이상)
	배송 포장지 포장재 최소화(종이 완충재, 테이프 없는 박스, 물로된 아이스팩 등 사용)	※배송 판매있는 경우만 대상
친환경 소비 홍보 등	포장재 미사용 또는 친환경 포장재 사용제품 홍보, 장바구니 사용 등 녹색 소비를 권장하는 홍보물을 매장 내 상시 게재	선택 (1항목 이상)
	포장재 미사용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적립금 등)	
	종이영수증 미발행 또는 선택적 발행 가능 시스템 운영	

## 6. 업무규정과의 관계

-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다.

## 7.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129호, 2022. 7. 4.>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녹색매장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 일부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녹색매장 운영 계획(대규모 점포)

<b>녹색매장 운영 계획</b>				
1. 녹색매장 일반	신청 구분		신규/재지정	
	기업명		매장명	
2. 환경경영 및 녹색제품 유통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3. 임직원 대상 친환경 의식 향상 계획(녹색매장, 녹색제품, 그린카드 관련 정책 교육, 캠페인 운영 등)				
4. 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현황	SKU (리스트 별도첨부)			
4-1. 녹색제품 판매 확대 계획	실적		계획	
4-2.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 현황 및 확대계획	① 판매장소 설치 형태		품목군 별 독립매장(     ), 기존매장 활용(     )	
	② 판매장소 및 판매품목		1) 세제(세탁, 주방, 섬유유연제 등) 2) 위생용품(비누, 샴푸 등) 3) 가전(컴퓨터, 모니터, TV 등) 4) 생활용품(화장지, 식기 등) 5) 인테리어용품(벽지, 페인트, 조명 등) 6) 기타(                     ) * 설치개수에 따라 중복 선택 가능	
	③ 홍보물 부착사항		1) 매장 유도안내판 2) 인증표시물(POP) 3) 상품표찰(Show card)	
	④ 판매장소 면적		m <sup>2</sup>	
	⑤ 판매장소 면적 확대 계획		1년차	2년차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5. 매장 운영물품 중 녹색제품 구매 현황	SKU (리스트 별도첨부)			
5-1. 녹색제품 구매 확대 계획	실적		계획	
6. 그밖의 매장 내 친환경 경영활동 계획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
			점장 :	(인)

[별지 제2호서식] 녹색매장 운영 계획(중소규모 점포)

<b>녹색매장 운영 계획</b>				
1. 녹색매장 일반	신청 구분	신규/재지정		
	기업명		매장명	
2. 환경경영 및 녹색제품 유통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3. 임직원 대상 친환경 의식 향상 계획(녹색매장, 녹색제품, 그린카드 관련 정책 교육, 캠페인 운영 등)				
4. 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현황	SKU (리스트 별도첨부)			
4-1. 녹색제품 판매 확대 계획	실적		계획	
4-2. 녹색제품 관리 및 전용 코너 운영계획	① 녹색제품 판매 매대 운영 형태	독립매장(     ), 기존매장 활용(     )		
	② 판매품목	1) 세제(세탁, 주방, 섬유유연제 등) 2) 위생용품(비누, 샴푸 등) 3) 주방용품(식기, 주걱, 호일 등) 4) 생활용품(화장지, 물백 등) 5) 기타(                             ) * 설치개수에 따라 중복 선택 가능		
	③ 홍보물 부착사항	1) 매장 유도안내판 2) 인증표시물(POP) 3) 상품표찰(Show card)		
	④ 판매 매대 면적	m <sup>2</sup>		
	⑤ 판매 매대 면적 확대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5. 매장 운영물품 중 녹색제품 구매 현황	SKU (리스트 별도첨부)			
5-1. 녹색제품 구매 확대 계획	실적		계획	
6. 그밖의 매장 내 친환경 경영 활동 계획				
20    년    월    일				
점장 :				(인)

## 【녹색매장 운영 계획 작성방법】

### 1. 녹색매장 일반(대규모, 중소규모매장 공통)

- 신청 구분에 신규 또는 재지정 표시
- 기업명에 본점매장, 매장명에는 지점매장 기재

### 2. 환경경영 및 녹색제품 유통 등 업무 담당자 지정

- 대규모 점포 : 녹색제품 관리, 녹색매장 운영 담당자 작성
- 중·소규모 점포 : 지원매장 점주 작성

### 3. 임직원 친환경 의식 향상 계획

- 대규모 점포 : 임직원 대상 해당 교육 관련 계획 작성(횟수, 내용 등)
- 중소규모 점포 : 매장 판매사원 대상 해당 교육 관련 계획 작성(횟수, 내용 등)

### 4. 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현황

- 판매 품목을 붙임파일로 제출

#### 4-1. 녹색제품 판매 확대 계획

- 실적 : 지정 신청 전년도 녹색제품 판매금액 작성
- 계획 : 지정 신청년도 녹색제품 판매 목표금액 작성

#### 4-2.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 현황 및 확대계획

##### <대규모 점포>

- ① 판매장소 설치 형태 : 품목군 별 독립매장(동일 품목 내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 기존매장 활용(일반상품과 병렬 진열 판매) 중 현재 운영하는 형태 표시(중복 선택 가능)
- ② 설치장소 : 녹색제품이 진열된 위치에 대한 번호를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 수기 기록
- ③ 홍보물 부착사항(「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사항)
  - 매장 안내유도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인증표시물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 ④ 판매장소 면적(지정신청 년도)
  - (품목군 별 독립매장) 가로 × 세로 × 진열대 수(다단 진열대를

설치한 경우 각 단의 바닥면적 합산)

- (기존매장 활용) 일반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개별 녹색제품 진열면적의 합

⑤ 판매장소 면적 확대 계획

- 녹색매장 지정 기간 동안(3년간)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 운영 계획 작성

<중·소규모 점포>

① 녹색제품 판매 매대 운영 형태 : 독립매장(녹색제품만 모음진열), 기존매장 활용(일반제품과 병렬 진열하여 판매) 중 운영하는 형태 표시(중복선택 가능)

② 판매품목 :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녹색제품 품목 모두 표시, 기타 경우 수기 기록

③ 홍보물 부착 사항 : 매장안내유도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등 제품 앞에 부착한 홍보물 표시

④ 판매 매대 면적(중규모 점포\*만 해당)

- (독립매장) 가로 × 세로 × 진열대 수(다단 진열대를 설치한 경우 각 단의 바닥면적 합산)

- (기존매장 활용) 일반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개별 녹색제품 진열면적의 합

⑤ 판매 매대 면적 확대 계획(중규모 점포\*만 해당)

- 녹색매장 지정 기간 동안(3년간)의 녹색제품 판매 매대 확대 운영 계획 작성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중형종합할인점 등에 해당(165㎡ 이상)하는 매장

5. 매장 운영물품 중 녹색제품 구매 현황

- 구매 내역을 붙임파일로 제출.
- 실적 : 지정 신청전년도 녹색제품 구매금액 작성
- 계획 : 지정 신청년도 녹색제품 구매 목표금액 작성

6. 그밖의 매장 내 친환경 경영활동 계획(필요시 추가 첨부자료 제출)
- 에너지 절감 활동 계획, 시민단체 연계 녹색제품 홍보 활동계획, 실내공기질 개선 계획 등

